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33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7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현대차증권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1.31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, 홍보 및 컨설팅
-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·광고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,
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